
소비자보호를 위한 한국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경영기획실장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Issues and Improvements on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Byung-Jin Jin^a, Byeong-Ho Lim^b

^a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b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Received 7 March 2019, Revised 21 March 2019, Accepted 21 April 201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omestic and foreign origin labeling system in order to implement origin labeling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to suggest governmental improvements by analyzing problems embedded in current labeling system. The results analysis show complexity of related legal system, lack of expertise at the stage of labeling, and inefficiency of crackdown authority. The improvement could be suggested in two ways: supporting plans for the ones who have duty of labeling and improvement plans in origin management system. As supporting plans, we suggest the need for an automatic origin determination system, appropriate education on origin stakeholders, and introduction of origin certification system. For improvement plans, there are unification of country of origin labeling related laws, utilization of FTA product specific rules, and QR code, expert confirmation system. Since the origin labeling issue has become important, proactive and quick responses must follow with thorough examination the effect of the origin labeling on consumer welfare.

Keywords: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nsumer Protection, Expertise Confirmation, Origin Determination System

JEL Classifications: F10, F13

^a E-mail: nury2040@origin.or.kr

^b E-mail: bhl@origin.or.kr

I. 서론

FTA를 필두로 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확산은 세계 시장의 단일화와 교역량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일반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또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온라인 구매물품이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Labeling)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수입쿼터에 해당되어 수입이 제한된 물품이 자국으로 반입된 것은 아닌지, 국내로 수입되었을 때 안전하고 무해한 물품인지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각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광우병 파동의 여파를 비롯하여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안전한 먹거리나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생활 밀접형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와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해 거래과정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방법과 확인 또는 판정절차를 실정법으로 규범화한 것으로써 원산지규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Sin Han-Dong,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의 방법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자체에 인쇄·주조·박음질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까지를 포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다른 물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생산자와는 달리 완성된 제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는 주체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고 표시의무자의 허

위 또는 오인표시의 의도를 원산지표시의 확인만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있는 소비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약자적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산지표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원산지표시 행위가 그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을 획일화하고 표시에 수반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Hur Yoon-Suk et al., 2016), 원산지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로벌 브랜드 확산과 국제분업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에 의지한 구매 행위가 자칫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표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 자체에 대한 호의에서 구매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물품의 품질과 생산과정 및 국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Gürhan Canli, Z ; Maheswarfan, D, 1988).

아울러 원산지표시는 그 자체로 표시의무자, 생산자, 소비자, 단속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고, 다양한 단속기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당이익의 취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와 기관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원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원산지표시의무자의 자율적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적 측면과 효율적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원산지표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들
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원
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제도의 법률적 근거
의 통합을 통한 제도운영의 효율화 제고 방안
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사회적 후생효과나 소
비자 선택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정재완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
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그
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징역
또는 벌금을 활용한 처벌보다는 과징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Chung Jae-Wan, 2008). 또한 그는 또
다른 연구에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물
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Chung Jae-Wan, 2009).

황화중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단속권한
이나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단속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청의 원산지 단속권한이 처벌수준 상이로 인해
상실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수산물의 원산
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간의 제재
조치에 대한 법률체계 검토결과를 토대로 합리
적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Hwang
Hwa-Jong, 2018).

또한 최임수는 시중유통단계에 있는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기본법인 ‘대의
무역법’과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관할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수
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규정하고 있
는 ‘관세법’을 중심으로 법령 위반시 행정법과
형사법 등을 포함하여 어떤 제재가 부과되어
지는지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의
억제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Choi Im-Soo,
2011).

강홍중·성윤갑은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하에서
원산지표시제도의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
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Kang Heung-Jun
·Choi Im-Soo, 2004).

박광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기본법인 ‘대의
무역법’에 중점을 두고 해당 법이 가지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그는 원산지
로 결정되는 1개 국가만 원산지로 표시하는 일
물일원산지제도(一物一原產地制度)를 채택하
고 있는 ‘대의무역법’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핵심부
품과 세트물품에 대해서는 일물다원산지제도
(一物多原產地制度)로 전환하여 제품에 포함된
중요 부품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여
야 하며,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대상
을 HS관세율표에서 세트로 분류하고 있는¹⁾ 전
체 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ark Kwang-So, 2013).

채형복 등은 주요국의 원산지규정과 우리나
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원산지규정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산지판
정과 원산지표시에 있어 외국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Chae Hyung-Bok et al., 2014), 허윤석 등은
원산지표시제도가 다양한 법률에 분산되어 운
영됨으로써 원산지표시 이해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표시의무자와 소
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Hur Yoon-Suk
et al., 2016).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의 경제적 선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국 원산지표시제도인
COOL(Country of Origin Labeling)제도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Loureiro, M. et al.(2003)
등은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원산지표시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가

1) ‘세트물품’은 HS통칙 3(b)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 어떤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되고, ③ 재포장 없이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격의 38%에서 최대 58%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Bienenfeld et al.(2016) 등은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이 생산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래 가격보다 돈을 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Umberger, W.J. et al(2003) 등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게 되었을 경우의 지불할 용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원산지 인지에 따라 격차가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단속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다만, 이들 선행연구 대다수는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방안,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 개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Ⅲ. 이론적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이론적 배경

1) 주요국의 원산지표시제도

(1) 미국

미국은 개별법령에서 규제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1930년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제1304조'와 '통상무역법(Commerce and Trade Act) 제45조', '연방무역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수입될 때 현품과 개별포장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영어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

입단계에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원산지표시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거나 압류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 중 가장 엄격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제외되는 대상 품목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원산지표시방법과 특정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일반적 원산지표시의무를 규정하고 '미국자동차 표시법' 등에서 일반적 의무 이외의 특수한 목적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이들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원산지규정은 법률보다 행정규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원산지표시규정은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에서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수출입거래법·외국환관리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여러 법규에서 의무 적용 여부와 원산지의 허위·오인을 유발하는 부당한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특혜분야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관세법·수출입거래법·외국환관리법·상공회의소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수입물품에 대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원산지표시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원산지표시의무와 관련하여 일본은 기본적으로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또는 오인 표시만 단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원산지표시방법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규에서 부당한 표시나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중국

중국의 원산지규정은 2001년 WTO가입 이전까지는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이었으나, WTO가입 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특혜원산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16조'에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내용이 매우 간결하여 추가적으로 '원산지표기관리규정'과 '원산지표기관리규정실시방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는 표시의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도록 하는 등록인증제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의 관리기관은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으로써 원산지표시의 통일적 관리와 원산지표시방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 수출입검험검역국이 관할 내의 원산지표시 신청의 수리와 심사·등록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에 있어서 중국은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하여 포장지에 품질·성분·중량·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식료품류에는 성분·제조일자·유통기한·생산자·수입업자 등의 정보가 중국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4) EU

EU는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에 관한 'EU 화장품법'에 의해 화장품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역내무역 및 역외무역 모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Chae Hyung-Bok, 2007).

다만, 개별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특정 산업에 대해 경쟁우위가 있는 경우 자사 제품 경

쟁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명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이나 식료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²⁾와 원산지명칭을 지적재산 차원에서 등록하고 보호해 온 것과 관계가 있다.

이로 인해 EU는 원산지명칭을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가진 상품의 보호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며 유사상품에 대한 원산지 명칭 사용이 원산지상품의 명성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던 추세에서 벗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낙농제품 주요 수출국이 2017년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EU국가들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laus, 2017).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EU 관세법은 제재조치와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위반에 대한 벌금은 상품의 관세율에 의거하여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

(1) 관련 법체계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규정은 물품의 유통단계나 종류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매우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데,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기본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인 '대외무역법령'으로써 일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판정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위반 시 벌칙

2)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탁월한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리적 표시'는 최근 각국이 맺고 있는 FTA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협정에서도 '고려인삼', '보성녹차' 등이 지리적 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Table 1. Major Regulations Related Country of Origin Labelling in Korea

Legal	Apply to	Implementing Dept.	Remarks
Foreign Trade Act	All trading good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verall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all trading goods
Customs Ac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gulation on customs clearance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ct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goods thereo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iority to other laws on agriculture and marine products
Notific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Korea Customs Service	Detailed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related laws
Act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remedy against injury to industry	All trading good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Unfair Trade Practices Regarding Violation of Origin Indicati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Violation of origin labeling as unfair competition
Fair display and advertising Ac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gulation on false country of origin labeling

Source : Author summary

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령’이 원산지표시에 관한 기본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개별법에서 관장품목에 적합한 원산지표시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령’ 이외에 원산지표시에 관한 주요 법령은 ‘관세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통관 시의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의 확인과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표시기준, 판매유형별 원산지표시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이전까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주세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식품과 관련된 원산지표시제도를 일원화시킨 법이라는데 의의가 있는데, 이러한 법체계의 통합화는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원산지표시방법과 시기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제조단계에서 원품에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인쇄(printing)·등사(stenciling)·낙인(branding)·주조

Table 2. A measure of infringement goods in Customer Clearance

Violation type	Against violating action	Against goods
False labeling		
Misleading labeling	Prosecution ⇒ Penal servitude or Fine, Penalty	Making correction in the field or Returning back to bonded area and Making correction
Damaged labeling		
No labeling		
Inappropriate labeling	Penalty Imposition by Customs	

Source : Chung Jae-Wan (2010)

(molding) · 식각(etching) · 박음질(sew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물품의 특성상 인쇄 등 원칙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 · 라벨(label) · 스티커(sticker) ·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원산지표시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물품 제조 과정에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원산지표시의무는 수입자가 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한국으로 반입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한데, 수입 후에 국내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판매되거나 단순가공 후에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은 수입자에게 수입자는 국내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취급하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에 관한 의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원산지표시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위반

원산지표시위반이란 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오인·표시손상이나 변경·부적정 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징역과 같은 신체상 구속이나 벌금이나 과태료·과징금과 같은 금전상 불이익,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반입명령, 시정조치요구 등과 같은 행정조치가 부가되게 됨으로 위반행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한 수준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조치하는 것과 통관 이후 국내시장 유통과정에서 단속하는 것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적용 법령은 사안에 따라 해당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은 수입물품 통관단계부터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물품이 판매되는 전체 유통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데, 적정 원산지표시 관리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의 중요성에 비해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과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여하는 정부기관 간 협업 부족으로 효율적 단속체계가 부족해 왔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된 전체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기관 협의회’³⁾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3)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발족하였음에도, 활동범위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라 정보교류를 위한 회의 등 극히 제한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효율화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Table 3. County of Origin Labelling Infringement Crackdown

	Korea Customs Servic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Local Government
Target	Trading goods	Agricultural products	Marine products	All
Stage	Clearance, Distribution	Distribution, Restaurant		Distribution, Restaurant
Based on	Foreign Trade Act, Customs Act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ct		Foreign Trade Act, Country of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ct
Department in charg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ource :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for Country of Origin Labeling Violation Crackdown(2014)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제품에 직접 원산지표시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입자와 판매자 등의 표시의무자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해 자사 제품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생산자,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주체이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기관관계자, 최종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허위표시, 오인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의 불일치⁴⁾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 여기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흐름을 ‘제도수립단계, 원산지표시단계, 위반행위 단속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원활한 원산지표시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원인을 확인해보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수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제도수립단계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는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관세법’ 체계에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법체계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목적과 대상품목 등에 따라 여러 법령이 산재해 있는 형태로 운

4) 예를 들어 표시의무자들은 원산지에 따라 제품가격에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산지허위표시를 시도할 수 있는데 반해, 원산지표시위반을 단속하는 기관관계자는 허위표시를 적발하여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자 하고, 소비자는 허위표시 물품에 대한 소비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등 이해관계자별로 극명한 이견이 존재한다.

영되고 있어 제도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Hwang Hwa-Jong(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 간에도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 법령 운영에 있어서도 복잡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복잡성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기준 정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각 법령 소관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업무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표시의무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단순히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법체계가 복잡하다는 점 이외에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과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질관리 관련 법령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원산지표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례로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해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농축수산품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이력추적관리 등을 통해 농축수산품에 대해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혼선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복잡성 해결을 위해서는 ‘관세법’에 원산지제도 운영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거나 별도의 원산지표시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원산지표시단계

원산지표시는 수입통관단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 단계에 걸쳐 최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자→도매→소매’로 이어

지는 전체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 준수 의무자들이 모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품목별·규모별로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엄정한 원산지표시 관리에 애로로 작용하며, 판매자의 경우 판매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준수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직접 원산지표시를 수행할 수 없는 유통단계 종사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원산지표시 오류와 달리 특정 원산지로 표시할 경우 가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3) 위반행위 단속단계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법령의 분산은 단속과 관련된 권한의 분산을 동시에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 단속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은 유통단계와 품목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서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기준과 단속 관련 사항이 각 개별법에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속과정에서의 혼란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종 물품에 대해 부처별로 상이한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통관 당시의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검증과 유통단계 적발내역에 대한 환류 가능성 또한 낮추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수입통관단계에서는 명확히 이루어진 원산지표시가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과정 등을 거치면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의 단

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관리되어야 하지만 관할 법령과 단속 권한의 분산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 또한 단속시기와 품목에 있어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에 집중되어 있어 표시대상 물품 전반을 아우르는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속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표시의무자들의 중복 단속에 따른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이 국가 전체적인 일정 및 단속대상 선정 등 종합적 단속계획 없이 수입통관 이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개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원산지표시제도는 다양한 운영목적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효율적 선택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 소비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시의무자가 제공한 원산지정보에 대해 소비자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고 일방적인 신뢰만을 가져야 하는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수립단계와 위반행위 단속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의 설계와 단속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산지표시단계에서는 표시의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양심적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된다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원산지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표시의무자들의 자율적인

제도 준수 의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함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 운영으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표시의무자 지원방안

1) 원산지판정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보급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해서는 대외 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가능 물품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시의무자들 중에는 자체적 관리와 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자체적 원산지관리와 판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표시의무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판정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⁵⁾

이와 더불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원산지표시방법 및 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기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실시함으로써 표시의무자와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의무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⁶⁾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HS코드로만 제시하고 있는데, HS코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을 직접 수행하는

-
- 5) 시스템의 개발·보급이 필요한 이유는 수입물품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추가 제조·가공을 통해 물품이 완성되는 경우 원산지판정은 HS코드 확인과 부가가치 산정을 위한 가격산정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내생산자 또는 유통업자들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 6)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원산지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사진자료를 포함한 원산지표시방법, 우수업체 내역 등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제한된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원산지표시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기여에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자사 취급물품의 HS코드를 인지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의무자 중 대부분인 도소매상 및 음식점 등 국내 거래자는 해당 코드만으로 자사 취급물품의 원산지표시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 HS코드와 함께 정확한 품명을 제공함으로써 표시의무자들이 쉽게 표시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정확한 원산지표시의 방법도 제공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미표시 등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2) 이해관계자 교육강화

효과적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엄정한 단속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운영도 중요한 사항이다.

표시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산지관리 역량과 자율적 준수여지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되, 주요 품목별·업태별 유통단체를 세분화하여 원산지표시방법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최종 소비자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식과 인식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표시 확인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해나가야 한다.

또한 원산지표시위반자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관리법규를 위반한 경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⁷⁾와 같이

7) 대외무역법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우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증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환적·증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우 또는 환적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증개허가를 받은 자

일정 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3) 원산지표시 인증제도 도입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통해 보호받는 소비자와는 달리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업체정보가 제공되는 농수산식품을 제외한 품목을 취급하는 표시의무자들은 단속에 따른 불편에 비해 법규 준수에 대한 반대급부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 품목에 걸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성실의무자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위반단속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준수 의지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표시 역량에 대한 사전적 점검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정보제공 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표시의무자의 인증취득 유인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2.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개선방안

1)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일원화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 관련 법제의 특징은 ‘관세법’에 통합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와 달리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원산지표시 방법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을 제시하면서 동 규정 제7항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

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표시의무자들이 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 이외에 개별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인력들이 해당 법령의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표시의무자의 경우에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판단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도 수립단계부터 원산지표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것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법령체계의 일원화를 적극 시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양한 법체계를 동시에 일원화 하는 것은 시간의 소요도 길고 일원화에 소요되는 협의의 어려움도 크므로,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법체계의 단계적 간소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는데, 이는 품목이나 특정목적에 따라 만들어져 있는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을 해당 품목 또는 특정목적과 관련된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이 우선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의 일원화와 더불어 산재해 있는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인한 표시의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공고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 통합공고는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통합하여 공고하고 있는데,⁸⁾ 여기에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함으로써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종합적 정보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8) 통합공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의 활용

일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통관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경우 위반 가능성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수입통관단계에서 물품의 검사는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검사와 수입신고 후 검사를 모두 합해도 5~7% 내외에 그칠 수밖에 없어 원산지표시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검사대상 물품의 효율적 선별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의 선별방법을 정밀화할 경우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원산지표시 위반의 발생 가능성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FTA특혜 수입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을 검사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서는 HS 6단위 수준에서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를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PSR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이상인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도록 검사대상 선별 방법을 개선하여 검사물품 선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경우 실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게 되어 검사 효율성 증진이 가능하다.

3) QR코드⁹⁾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현재와 같이 원산지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방법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쉽게 허위표시를 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9) QR코드는 총칭으로 2차원 행태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1차원적 바코드에 비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숫자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 일반적인 QR코드의 크기는 2cm 정도이나 이를 약 1/4 크기로 줄인 마이크로 QR코드도 사용할 수 있어 전자부품 등과 같은 작은 공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의무자에게는 원산지표시를 통해 제품과 기업에 대한 홍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축산물유통이력제도¹⁰⁾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¹¹⁾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원산지표시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QR코드는 기존 바코드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정보복원성·인식률·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이 있고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상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외에도 크기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어 제품의 크기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할 위치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넓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s)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제도는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QR코드를 활용하여 보편화 될 수 있다.(Fraser, 2018)

이러한 QR코드의 특성을 원산지표시에 활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단순히 원산지만을 표시하는 수준을 벗어나 품명·상표·통관일자·원산지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지며, 낙인·박음질·인쇄·등사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제품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글씨 크기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의 단점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 원산지표시 전문가 확인제 도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원재료로 투입되어 추가적인 제조·가공을 거치는데 사용되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국내 유통단계에서 허위표시 등의 재표시 행위가 없는 한 수입통관 당시에 표기되어 있는 원산지표시가 그대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입통관 당시에 원산지표시에 대한 확인 후 통관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의도적 위반을 제외하고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표시 상태 유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적정 원산지표시의 확인을 위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관세당국의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자칫 통관지체를 유발할 수 있어 수입자 등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 당시 수입자의 자율적 원산지표시 관리를 유도하면서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산지표시 전문가 확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통관단계에서 관세사가 수입물품의 적정 원산지표시에 대한 확인을 필수적으로 수행한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원산지표시 검사에 소요되는 관세당국의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기업의 자율적 원산지표시체계 확립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V. 맺음말

2018년 2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WT/DS495/R)’에 대한 WTO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금지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하여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한 조치라고 판결함으로써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같은 해 4월 상소하

10) 축산물의 도축포장·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위생과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11) 관세청이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수입물가 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도모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병행수입된 물품이 세관을 통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피력함으로써 원래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과 결과는 한편으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례와 같이 수입통관단계에서 다양한 검사 및 증빙요건에 의하여 통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구매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표시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원산지표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재조치의 통일화 등에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측면에서 현재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 수립단계에서 법 제정 당사자들은 각 법령이 가지는 상이한 입법취지로 인하여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단계에 있어서도 표시를 실제 담당하는 유통단계 당사자들의 낮은 전문성으로 표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수의

소관부처로 인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단계에서의 단속권한의 분산, 중복단속 및 일시적 단속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원산지표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원산지표시의무 측면에서 원산지표시판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원산지표시 관련 교육을 시행하며, 정부차원에서의 원산지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관리측면에서도 기존에 제기되었던 관련법령의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통관단계에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단계의 소비자가 구매시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에 원산지표시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소비자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강력한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다(Kim, Seong-Cheon, 2012).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문제와 같이 소비자에게 건강·안전 및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 조차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슈를 계기로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민간·학계·정부는 법체계의 정비 및 관련연구 등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시급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ienenfeld, J.M., Botkins, E.R., Roe, B.E., Batte, M.T. (2016), "Country of origin labeling for complex supply chains: the case for labeling the location of different supply chain links", *Agricultural Economics* 47 (2016) 205-213.
- Choi H.S. (2018), "Study on the WTO Korea - Import Bans and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for Japanese Products Case", *Seoul Law Review* 26(2), 2018.8, 557-592.
- Choi, I.S. (2011), "A Study on Effective Control Plans for Breach of Country of Origin Labeling", *Journal of Tax Studies*, 11(2), 2011.8, 258-294.

- Chae, H.B. (2014),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System”,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34-104.
- Chung, J.W. (2008), “A Study on Origin Labeling Violations of Ex/Imports and Their Handling”,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9(2), 2008.5, 125-145.
- Chung, J.W. (2009), “Efficiency Improvement of Codification System for Country of Origin Labeling, Hannam University Research Paper, 45-180.
- Chung, J.W. (2010), “The effective measures to enforce in stage of circulation market imported goods with false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1(2), 2010.5, 369-390.
- Frazer, I., Balcombe, K. (2018), “Wrapped in the Flag: Food Choice and Country of Origin Labelling”, Agricultural Economics Society and Europ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conomists, EuroChoices, 17(3).
- Government Cooperation Council for Country of Origin Labeling Violation Crackdown(2014), “Viol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practice”, 39
- Gürhan Canli, Z and Maheswarfan, D (1988), “Cultural Variations in Country of Origin Effe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7(3), 309-312
- Hwang, H.J. (2018), “A study on rational harmonization of penalties for indication of origin”,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9(2), 2018.5, 43-60.
- Jin, B.J. (2015),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crackdown on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28.
- Kang H.J., Seong Y.K., (2004), “An Empirical Study on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6(2), 2005.5, 49-72.
- KIM, S.C. (2012), “A Study on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s”, Policy Reserach Paper, 2012.12, 1-148, Korean Consumer Agency.
- Klaus, B. (2017), “France and Italy: Introduction of Compulsory Labelling of the Country of Origin for Milk and Dairy Products and Meat as an Ingredient”, *European Food & Feed Law Review*
- Loureiro, M.L. and Umberger, W.J. (2003), “Estimating Consumer Willingness to Pay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8(2):287-301.
- Park, K.S.,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rigin Marks Issues in the Korea Foreign Trade Act”,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57, 2013.2, 221-241.
- Shin, H.D. (2010), “A Study on the working of Origin Country Labeling system of Korea”, *Korea Trade Review*, 35(1), 273-304.
- Umberger, W.J. Feuz, D.M. Calkins, C.R. and Sitz, B.M. (2003), “Country-of-Origin Labeling of Beef Products: U.S. Consumers’ Perceptions”,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34(3)
- Hur, Y.S., Yun, H.S., Lee, Y.W. (2017), “A Study on the Awareness of Country-of-Origin Labeling System with a Focuses on the Consumer and Parties interested”, *Korea trade review* 42(1), 2017.2, 99-124.